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 의미와 한계 : 인격교정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The meaning and limit of resocialization as the The purpose of
Correction : focused on the character correction program

김 선 영*
Kim, Sun-Young

목 차

- I. 들어가며
- II. 행형에서 여러 목적의 가능성
- III. 행형에서 재사회화가 가지는 의미
- IV. 재사회화 개념에 포함된 문제점과 한계
- V. 결론

국문초록

본 논문은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의 의미, 특히 최근 행형 프로그램에
서 중요시되고 있는 '수형자의 인격교정 프로그램'이 정당한 것인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과거 사회적 결핍을 채워주는데 주된 목적이 있었던 재사회화 프로그램은
사회과학의 발달과 안전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로 점차 수형자 인격을 교
정하여 범죄를 억제하겠다는 방향으로 변화되었고 그 흐름에 따라 교정시설
에서 재사회화의 방법으로 인격교정 재사회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14.09.22

심사완료일 : 2014.10.22

게재확정일 : 2014.10.28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물론 재사회화에 있어 도덕성의 회복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을 교정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행해지는 것과 같이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인격교정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경우 인도적, 헌법상, 교정 경제학적, 효과 등 여러 면에서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교정 재사회화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극적 개입을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행형의 목적, 재사회화, 치료적 처우, 도덕성, 인격교정프로그램

I. 들어가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소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¹⁾는 1997년 일본의 고베에서 일어난 엽기적인 살인사건²⁾을 추적하여 쓰여 졌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 히로시는 같은 반 학우 A에 의하여 잔인하게 살해되었고, 법원은 A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3년형을 선고하였다. 시간이 지나 히로시의 가족이 경제적·심리적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것에 반해 가해자 A는 소년원에서 나와 평범한 학생으로 자라났고, 유명한 변호사로 사회적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이후 A에게 연락을 한 히로시 부모가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면 받아주겠다”는 말에 A는 “뭣 때문에 내가 사과를 해야 합니까?”라며 반문한다.

가해자 A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았다. 소년원에서 퇴원한 후 그는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사회적 성공을 이루었다. ‘사회질서를 잘 유지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1) 오쿠노 슈지(서영욱 옮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웅진지식하우스, 2008.

2) 경찰이 발표한 부검 소견에 따르면 히로시는 흉부 12군데, 등 7군데, 두부 12군데, 안면 16군데 등 총 47군데가 칼로 난자당해 있었다. 특히 왼쪽 가슴 부위의 상처는 깊이가 15센치미터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치명상이었고 쇄골 아래 동맥도 절단되어 거의 즉사 상태였다. 경찰은 A가 히로시를 찔러 죽인 뒤, 왼손으로 머리를 세게 누르고 예리한 칼로 어깨부터 수평으로 목 부분을 잘랐다고 단정 지었다.

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은 출간 이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히로시의 부모에게 사과하지 않은 A의 모습에 독자들은 공분했고, 온정주의식 형사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비판과 회의적인 시각을 펼쳤다. 그 근거에는 소년원에 다녀왔음에도 히로시가 변화되지 않았고, 이것은 소년원의 교정프로그램이 히로시를 '도덕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만큼 효과가 있지 않았다는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실망이 있었다. 물론 이 외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의 도덕적 회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화와 소설은 많이 있다.³⁾ 이러한 작품들 역시 많은 경우 가해자에게 '도덕성의 회복'을 요구하고 마음속으로 참회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재사회화 여부를 결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바람은 실제 행형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미쳐 수형자의 도덕성 회복을 위해 인격교정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해서 재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고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고 나온 범죄자에게 도덕적인 회복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일까. 다시 말해 '재사회화'의 개념 안에 '도덕성의 회복'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일까. 행형의 목적으로 재사회화는 무엇을 의미하며, 범죄를 저지른 자는 어느 정도까지 재사회화가 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와 같은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하여 재사회화를 행형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근거(Ⅱ)를 알아보고, 다양하게 해석 될 여지가 있는 재사회화의 언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를 구체화한 현대 행형프로그램의 모델을 살펴봄으로서 범죄자의 도덕적 회복이 재사회화의 개념에 속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도록 한다(Ⅲ). 이후 현재 우리나라 행형프로그램에 문제점은 없는지, 행형에서 재사회화의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Ⅳ) 글을 마친다.

3) 2011년 10월 27일에 개봉한 '오늘(감독 : 이정향, 주연 : 송혜교(다혜), 송창의(지석))'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피해자 다혜는 "출소했는지도 몰랐어요. 모범수라는데 저는 사과편지 한 장 못 받았어요. 용서는 누가 해주는 겁니까. 이 사회는 별도 대신주고 용서도 대신해줍니다. 자기는 죄 값을 다 치렀다고 했는데, 징역 살면 사람 죽인 것도 없어질니까, 미안하단 말을 듣고 싶었어요. 제가 한 용서가 헛일이 안 되려면 저는 미안하단 말을 꼭 들어야겠어요. 안 그러면 용서 취소할 겁니다."라고 하여 '범죄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는 것만으로는 죄(책임)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전달한다.

II. 행형에서 여러 목적의 가능성

1. 행형에 대한 개념적 이해 : 좁은 의미의 행형

행형(行刑)은 '형의 집행'을 의미한다. 하지만 행형을 '형벌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한다면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⁴⁾ 우리 형법 제 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등 9가지 형벌을 집행하는 것 모두 행형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형의 내용을 담고 있는 (구)행형법⁵⁾이 적용범위를 시설 측면으로 한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징역, 금고, 구류형을 받은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법에서 행형을 교정시설 내 수용자에 대한 형벌의 집행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통상적으로도 행형은 시설 내 처우 중 자유형의 집행과정에서 행해지는 처우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⁶⁾ 행형의 범위는 '수형(受刑)시설에서의 형의 집행'으로 한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넓은 의미의 행형은 형벌 전체의 집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지만 '행형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서의 행형은 자유형의 집행인 좁은 의미의 행형을 의미한다.

2. 행형의 목적으로 재사회화의 당위성

그렇다면 행형의 목적은 무엇일까. 행형의 목적과 형벌의 목적이 같을 수 있을까? 실제로 자유형은 형벌의 하나로 존재하며, 동시에 형벌의 하위개념으로 존재한다. 하위개념은 상위개념에 종속되기 때문에 행형의 목적은 형

4) 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3면.

5) 행형법(2006.7.1.시행 법률 제7849호)은 현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6) 이윤호, 「교정학」, 박영사, 2011, 9면.

벌이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자유형은 다른 형벌과 달리⁷⁾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간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형의 목적이 형벌의 목적과 완전히 동일할 수 없고 그 자체로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벌의 목적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목적들이 행형에서 적용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절대적 형벌이론

응보이론으로 대표되는 절대적 형벌이론은 형벌을 부과하여 일정한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목적성을 전제로 한다.⁸⁾ 절대적 형벌이론의 대표적인 사상가로는 칸트와 헤겔이 있고 이 둘은 응보의 개념에 대해서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기는 하지만⁹⁾ 형벌을 위하나 교화, 개선의 도구로 보지 않고 범죄에 대한 응보로 바라보는 것에 동의한다. 즉, 절대적 형벌이론에 의하면 정당한 형벌은 형벌의 종류나 강도가 범죄에 상응하여야 하며 형벌을 부과하는 그 자체에 의미가 있지 어떠한 목적추구도 하지 않는다.

자유형의 경우 몇 년이라는 시간의 양은 정해져 있지만 시간을 채우는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책임의 양과 형벌의 양이 일치해야 하는 절대적 형벌이론을 행형의 목적으로 삼기 어렵다. 왜냐하면 행형시설이나, 행형 프로그램에 따라 수형자가 받는 고통의 정도(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가 개인에게 자유형이라는 제재를 부과하면서 어떠한 합리적인 목적추구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범죄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연대성을 높이고 견고히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회국가임무¹⁰⁾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적 형벌이론을 행형의 목적으로 삼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7) 자유형을 제외한 사형,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몰수와 같은 형벌은 형집행과 동시에 형이 종료된다.

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23면.

9) 칸트는 형벌을 범죄에 대하여 탈리오적 응보관, 헤겔은 등가적 응보관을 취한다.

10) 김혜경,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24면.

2) 상대적 형벌이론

절대적 형벌이론은 현실적 설득력, 인간존엄의 완전한 승인, 책임원칙의 준수라는 점에서 지지를 받았지만 형벌의 사회·국가적 측면을 간과할 뿐 아니라 형사 정책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단점 때문에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후 이에 대한 반성과 계몽주의 사상의 도래, 사회의 급변으로 상대적 형벌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상대적 형벌이론은 절대적 형벌이론에서 취하는 관념적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현실사회 속에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 즉 사회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형벌부과의 정당성을 찾는다.¹¹⁾ 상대적 형벌이론은 일반예방이론과 특별예방이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예방이론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소극적 일반예방(잠재적 범죄자의 범죄저지)과 적극적 일반예방(일반인의 규범의식강화)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한편, 특별예방이론은 범죄자에 대한 영향력 행사로서 형벌을 통해 범죄자를 교화함으로써 출소 후에 재범을 하지 않게 하거나 교화가 불가능한 범죄자의 경우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¹²⁾

일반인을 '두렵게' 만들어 범죄를 억지하겠다는 소극적 일반예방이나 이를 통해 규범의식을 강화하여 법질서를 준수하게 하여 범죄로부터 단절을 유도¹³⁾하겠다는 적극적 일반예방의 경우 각 이론의 전제인 '(범죄자에 대한) 처벌 → (이를 지켜본 일반인들의) 두려움 → (일반인들의) 범죄억제'에 대한 오류와 정당성의 문제가 존재한다. 먼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범죄의 억제 사이에 명확한 연결고리가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연결고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입장을 취하게 된다면 형벌이 범죄자를 도구로 하여 일반인의 범죄억제를 추구하여도 되는지 여부와 더욱더 효과적인 일반예방을 위해 자유형의 집행이 더욱 잔혹해지고, 가혹해지는 위험을 감수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될

11) 김인선, "형벌의 본질과 형벌권의 범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교정」 제227권, 교정협회, 1995, 22면.

12) 배중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34면.

13) 최준,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교정복지연구」 제25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78면.

수 있다.

3)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의 우위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절대적 형벌이론에 의하면 책임의 양과 자유형의 형기 및 내용으로 인해 범죄자가 느끼는 고통과 피해가 비례하여야 하지만 책임의 양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뿐 아니라 자유형으로 인한 수형자의 고통의 양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편, 상대적 형벌이론 중 일반예방의 경우 범죄자를 통하여 일반인들의 범죄를 억제하거나 규범의식을 강화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이념인 인간존중사상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절대적 형벌이론이나 상대적 형벌이론 중 일반예방의 경우 행형의 기능으로 작용할 수는 있을지언정 목적으로 삼기는 어렵다.

한편, '범죄자를 교화(재사회화)'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로부터 격리(보안)'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겠다¹⁴⁾는 특별예방의 입장에서 '범죄자의 교화'는 우리나라가 지향하고 있는 사회국가, 다시 말해 국가가 범죄자에 대하여 사회적인 연대성을 높이고 견고히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사회국가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재사회화를 위해서는 안전한 구금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¹⁵⁾ '사회로부터의 격리'는 행형의 목적이라기보다 행형이 갖는 본질적 기능이나 전제조건, 수단으로 볼 수 있다.¹⁶⁾

III. 행형에서 재사회화가 가지는 의미

재사회화는 범죄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의미하지만 건전한 사회복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사회화라는 추상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

14)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34면.

15) 이호중,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이론적 논증", 「경제연구」 제2권,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227면.

16) 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53면.

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재사회화 의미의 불명확성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실현 가능한 행형 프로그램의 영역 역시 불명확해지는 경향이 있고 이에 따라 수형자는 방치되기도 하고 지나친 국가의 개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사회화 의미에 대한 정의지움은 중요한 문제이다.¹⁷⁾

재사회화의 개념은 무엇이며 최근 행형에서 재사회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형 프로그램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1. 어의적 접근 : 재사회화 의미의 다양성

재사회화는 말 그대로 사회화를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화란 사람이 속하고 있는 사회집단의 규범이나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문화를 배워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을 의미하고,¹⁸⁾ 재사회화는 성인이 되어 생활양식이나 행동규범을 다시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알 수 있듯 재사회화는 사회집단의 규범, 가치관, 행동양식을 포함하기 때문에 범위가 상당히 넓다. 단순하게는 규범과 가치를 익혀 범죄자로 하여금 불법과 합법 중, 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재사회화의 범위에 들어가고, 더 나아가 도덕성의 회복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도 재사회화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형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에서도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행형의 목적을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것을 밝히고 있지만 재사회화의 방법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있다.¹⁹⁾

17) 박달현,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이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256면.

18) 두산백과(<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06088&cid=40942&categoryId=31614>)

19) 재사회화의 개념에 대해서 '범죄자의 사회화에 대한 결손을 메우고, 사회화에 대한 학습 기회와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출소 후에 범행하지 않고 정상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박달현,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 이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한국형사

2. 현대 행형에서 재사회화 모델

더욱 더 효과적인 재사회화 방법을 찾기 위해 각국에서는 여러 시도들이 있어왔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변화되었다. 현재 재사회화 이념은 크게 '참회를 통한 재사회화 모델', '교육모델', '치료모델', '재통합모델'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참회를 통한 재사회화 모델'은 범죄자 스스로 속죄를 하여 형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지만 재사회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²⁰⁾ 속죄가 재사회화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입장²¹⁾이며, '교육모델'은 수형자들이 석방 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직업교육이나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육을 통해 수형자 스스로가 자기통제를 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²²⁾는 입장이다. 다음으로 '치료모델'은 인격이나 사회화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가정아래 범죄자를 환자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므로 치료모델에서는 범죄행위의 원인을 행위자의 심리적 내부에서 구하고 이상행동의 원인이 되는 심리적, 내적 조건을 바꾸는데 주력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교정당국은 범죄자를 치료하기 위해 적당한 처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하고, 필요하다면 이를 강제로 실시하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교정기관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한다.²³⁾ 마지막으로 '재통합모델'은 범죄자의 성장과 범죄의 발생은 지역사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범죄 원인론을 중심으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재통합모델에서는 수형자를 지역사회와 연관시켜 '법 공동체로의

정책학회, 257면)이라는 견해와 개선교화 처분을 받은 수형자가 출소한 후에 재범을 하지 않고서도 그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장래적·경험적 효과를 나타내는 것(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55면)이라는 정의지움이 있지만 이러한 견해들 역시 교정교화의 방법에 대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 20) 신치재, "형벌속죄이론은 아직도 정당인가? - 그 사상적 기초 및 로고테라피적 형벌관에 의한 새로운 해석 -", 「형사법연구」 제7호, 한국형사법학회, 1994, 134면.
- 21) 절대적 형벌이론에서의 속죄가 그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면 여기에서의 속죄는 재사회화를 위한 장래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22) 조준현, "행형의 이념·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9호, 한국교정학회, 2005, 7면.
- 23) 장규원,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 사회 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32면.

재편입'을 목적으로 하며²⁴⁾ 여기에서 수형자는 주체성과 자율성이 인정되어 본인의 동의와 참여하에 처우프로그램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이 모델은 수용자를 단순한 처우의 객체로 보지 않고 수형자가 상호신뢰에 입각하여 자발적으로 규율을 지키고 처우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상호학습을 통한 영향력을 주고받는다. 이러한 점에서 수용자는 처우의 주체적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²⁵⁾

IV. 재사회화 개념에 포함된 문제점과 한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범죄자가 수용되어 있는 동안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도덕적 마음상태를 가지고 사회에 나오길 바란다. 특히 행형 프로그램의 경우 정책적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는 프로그램의 구성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며 최근에는 안전사회에 대한 욕구와 사회과학의 발전, 인간 내적인 영역에 대한 탐구로 인해 사람의 인격을 교정하여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생각이 커져갔다. 그래서 최근 행형의 경향은 단순히 사회적 결핍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 인간 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 인간 내적인 영역에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재사회화의 개념에는 문제가 없을까.

1. 인성의 변화를 위한 시도

기존 우리 행형 프로그램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교도작업, 직업훈련, 학과교육 등을 통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하지만 사회학과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 심리적 프로그램이 인격교정에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확신으로 사회적 결핍을 채워주는 재사회화 행형프로그램보다 분노조절, 자아 존중감 찾기 등 심리프로그램을 통해 인격적 부분을 재사회화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24) 재통합모델로는 개방시설에서의 처우, 외부통근제도, 귀휴제도 등을 들 수 있다.

25) 장규원,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 사회 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 35면.

현재 수용자에 대한 인성교육은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2장에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인성교육에 대한 실천은 민영교도소의 운영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에 개소한 아가페 민영 교도소의 설립 목적은 '현대적 교육형 이념보다 더 근본적으로 인간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 내면의 자기 성찰과 내면의 자기 변화를 통해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나게 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²⁶⁾ 아가페 민영교도소의 행형프로그램은 크게 종교, 원상회복, 책임성, 공동체 형성, 생산성, 멘토링 등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심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²⁷⁾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는 2013년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염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행형 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으로 수용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교정교화프로그램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²⁸⁾

2. 인격교정 재사회화 프로그램의 문제점 검토

1) 인도적 문제점

수형자의 인격교정에 초점을 맞추는 치료·교정 이데올로기와 결부된 재사회화 개념은 국가에 의한 무제한적인 인권침해를 교묘하게 위장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인성변화 프로그램은 범죄자는 자아존중감이 낮고, 충동성과 공격성이 높고, 반사회적이며, 분노조절능력이 낮다는 심리적 결함을 전제²⁹⁾로 하기 때문에 인도적 문제점 역시 존재할 수 있다.

26) 김일수, 한국 기독교 교도소 모델과 이념적 기초, 4면(<http://www.agapeprison.org>).

27)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종교 : 단계별 각종 성경공부, 제자훈련, 영상 신앙훈련, 서로 섬기기, 경배와 찬양, Q.T, ② 원상회복 : 합동접견예배, 수용자 자녀관리, 생활기술 훈련, 아버지 학교 등 가족관련 프로그램, 내적치유 프로그램, 수용자 가족 교도소 참관 프로그램, ③ 책임성 : 피해자 배상, 용서의 편지 작성, 피해자와 가해자 중재 프로그램,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초청 프로그램 등, ④ 공동체 형성 : 대인관계훈련, 분노조절프로그램, 집단상담, 영적교제의 시간, ⑤ 생산성 : 직업훈련, 학과교육, ⑥ 멘토링 : 개인상담 등이 있다.

28) 2013년 8월 28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참고.

29) 박소은, "교도소 수형자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충동성,

또한 국가가 행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범죄자가 출소 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범죄는 형법상 금지된 행위를 의미하지 내심의 의사를 뜻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개인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도덕성이 결여된 채 교정시설에서 퇴소하더라도 실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될 뿐 법의 영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행형 프로그램에서 재사회화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도덕성 회복까지 강요할 수 없다.

2) 헌법상 문제점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신의 생활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의 자유는 사회의 보호 또는 당사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형자의 인격을 재사회화시키는 것은 헌법상 문제가 있다.

인격교정 프로그램은 인간 내적 영역을 침해하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의지와 주체성을 무시하고 수용자의 동의에 의하지 않는 치료를 강제하거나 치료라는 이름으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를 내포하고 있으며 국가가 수용자에게 자신의 윤리의식과 사상을 표명하도록 강요하거나 사상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

3) 교정 경제학적 문제

한편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9조에서 인성교육은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중 몇몇 특정부류, 예를 들면 성적 도착증으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신이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것과 같은 범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범죄가 상황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며³⁰⁾ 특히 과실범 수형자의 경우 처음부터 인성교육이 필요 없기 때문

공격성, 자아존중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122면.

에 모든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교육은 교정경제학적 관점에서 몹시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4) 효과의 문제

재사회화이념은 경험적 효과를 지향하는 형벌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³¹⁾ 형벌 그 자체가 목적인 절대적 형벌이론은 그 성과여부를 물을 필요가 없지만 재사회화이념의 경우 장기간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경우 그 자체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³²⁾

하지만 인간 내심의 의사는 본인의 노력 없이 외부의 자극만으로 변화되기 어려우며 교정프로그램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와 처우 대상자의 개인적 편차, 생활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측정 역시 어렵다.³³⁾ 한편, 인격교정프로그램이 범죄자들의 특성이라고 주장되는 자아 존중감, 충동성, 공격성, 반사회적, 분노 조절능력 등에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범죄유발요인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인한 효과가 범죄억제로 바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것 역시 힘들다.

3. 재사회화 이념의 한계

우리 행형 프로그램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위해 교육을 통한 사회적 결핍을 채워주거나 인성변화를 위한 시도들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인성변화를 위한 행형 프로그램의 경우 인도적·헌법상·교정 경제학적·효과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형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인성교육을 강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행형 프로그램은 범죄자를 강제로 개선하는 것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 문제

30) 한영수, "행형의 목표로서 수형자의 사회복귀", 『저스티스』 제32권, 한국법학원, 1999, 123면.

31) 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60면.

32)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 패러독스의 미학 -』, 세창출판사, 2012, 15면.

33)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40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처우를 받는 수형자의 자율을 최대한 존중하는 '기회제공형' 형태가 되어야 하며, 이때 국가가 제시한 행형 프로그램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³⁴⁾

한편, 행형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를 교정하고, 개선할 수 있다는 교정낙관주의 내지 적극적 개념의 재사회화를 지양하고, 수형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행형의 개입을 자제³⁵⁾하여 무엇을 가르쳐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아닌 출소 후 재범만이라도 막자는 소극적 개념의 재사회화를 지향하여야 할 것이다.³⁶⁾

V. 결론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살인·강도·강간·방화와 같은 강력범죄에 있어서 재범률은 70%가 넘는다. 이러한 통계는 지금까지 행형단계에서의 재사회화가 성공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재범의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교정하위문화성, 사회적 낙인, 반사회성, 학력 등이 있으며 이 순서대로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정시설 내의 분위기, 사회적 낙인 등이 주를 이루고 반사회성은 그 이후에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점차 확대되는 사회 내 처우와 같이 교도소 구금의 대체수단을 확대해 나가는 경향은 옳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사회적 낙인은 교정시설에 다녀왔다는 것에서 드러날 뿐 아니라 출소 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드러나게 되므로 행형단계에서 석방 후에 사회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성해주어야 한다.³⁷⁾

한편, 인격교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개인의 내적 영역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

34) 배중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64면.

35) 강영철, “행형의 목적과 수형자의 재사회화”, 「교정연구」 제11호, 한국교정학회, 2000, 257면.

36) 배중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64면.

37) 한영수, “행형의 목표로서 수형자의 사회복귀”, 「저스티스」 제32권, 한국법학원, 1999, 121면.

고, 범죄자에게 도덕성의 회복을 요구하는 것은 국가의 권한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거기에 현실적 필요성과 효율성까지 입증되지 않아 이를 행형단계에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다만, 국가에서 강제할 필요가 없을 뿐 개인적인 필요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행형단계에서 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정도의 인격교정프로그램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인선, "형벌의 본질과 형벌권의 법철학적 근거에 관한 연구", 「교정」 제227권, 교정협회, 1995.
- 김일수, 「전환기의 형사정책 - 패러독스의 미학 -」, 세창출판사, 2012.
- 김혜경,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 박달현, "행형의 목적으로서 재사회화이념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 제19권, 한국형사정책학회, 2007.
- 박소은, "교도소 수형자를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 : 충동성, 공격성, 자아존중감 척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0권, 한국치안행정학회, 2014.
-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8.
- 배종대/정승환, 「행형학」, 홍문사, 2002.
- 신치재, "형벌속죄이론은 아직도 정당한가? - 그 사상적 기초 및 로고테라피적 형벌관에 의한 새로운 해석 -", 「형사법연구」 제7호, 한국형사법학회, 1994.
- 오쿠노 슈지(서영욱 옮김),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웅진지식하우스, 2008.
- 이윤희, 「교정학」, 박영사, 2011.
- 이호중, "수형자의 법적 지위의 이론적 논증", 「경제연구」 제2권, 경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 장규원, 「교정처우 모델에 관한 연구 - 사회 치료적 처우를 중심으로 -」, 한국

- 형사정책연구원, 2003.
- 조준현, “행형의 이념·목적과 행형법 개정방향”, 「한국교정학회소식」 제29호, 한국교정학회, 2005.
- 최 준, “형벌의 목적과 재사회화 이념”, 「교정복지연구」 제25호, 한국교정복지학회, 2012.
- 한영수, “행형의 목표로서 수형자의 사회복귀”, 「저스티스」 제32권, 한국법학원, 1999.
- 한영수, 「행형과 형사사법」, 세창출판사, 2000.

[Abstract]

**The meaning and limit of resocialization as the The purpose of
Correction : focused on the character correction program**

Kim, Sun-Young

Legal Research Institute of Korea University, researcher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find out if the 'prisoners' character correction program can be justified which is being considered important in the correction programs while thinking about the limits of correction.

It is quite hard to propose the methods of realizing resocialization that can be allowed in a constitutional state but if we can gradually exclude the unjustifiable methods, the range of these methods can be reduced and the abuse of human rights of the prisoners can also be reduced so it is necessary to check the legitimacy of a new program before and right after the application of itself.

The purpose of our criminal administration laws have the purpose of the

resocialization of the prisoners. Resocialization contains various concepts and the treatment of the prisoners can be quite different according to how we define it but at the moment it is not quite clear how we can realize it.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meaning and setting up the limits of resocialization.

Resocialization focused on the supplement of social deficiencies in the past and gradually changed its goals to prevent crime by correcting the characters of criminals according to the advances in social science and the people's demand for a safe society. Following this trend,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applying character correction programs as a method of resocialization.

This thesis took a look at the possibilities of various purposes of the meaning and limits of resocialization as the purpose of correction to check the legitimacy of the character correction programs and confirmed the superiority of resocialization purposes. The completion of this thesis takes a look at the meaning of resocialization in correction and the problems and limits which it carries.

The conclusion is that the correction of character has an important role in the field of resocialization and character correction programs should not be totally prohibited. But the current system of applying this program to all prisoners may lack legitimacy on terms of humanitarian, constitutional, correction economical and effective reasons and therefore when the method of resocialization is applied, we must respect the autonomy of the prisoners as much as possible and minimum intervention should be performed.

Key words : The purpose of Correction, resocialization, character correction program, therapeutic treatment, morality